

코로나 핑계에...방치되는 취약계층 아동

광주 읍들어 '아동돌봄 가정방문' 17.7% 불과...전국 최저 자치구들 "감염 위험에 자제" 불구 타지역 42.3%와 대조 확대 흔적·영양 상태·보호자 태도 등 방문 통해 확인해야

광주지역 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의 A군은 지체장애 3급의 아버지와 지적장애 2급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A군 가정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제외하고도 지적장애 3급을 가진 누나와 총 6명이다.

낙적이지 않은 형편에서 키워지던 A군이 저신장·저체중 상태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은 복구가 드림스타트 사업의 하인인 '아동돌봄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했다.

A군은 해당 연령 표준 몸무게인 11킬로보다 1키로 가량이 적게 나가고, 신장도 표준보다 2cm 적은 80cm에 그쳤다.

복구는 A군 가정에 매일 3끼 식사와 2차례씩 영양제를 제공키로 했다.

어머니만 있는 모자 가구의 B(12)군은 충치가 3개가 발견되고 시력도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 기초학습조차 부진한 상태로 비만증세까지 발견됐다. B군의 어머니는 갑상선항진증과 부정맥을 앓고 있고, B군의 동생도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다.

가정방문을 한 담당자는 B군에게 시력 관리와 더불어 오는 11월3일 치과 치료를 연계해주고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인천에서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려다가 일어난 불로 중상을 입은 형제 사건 등 취약계층의 아동 돌봄 공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에서도 코로나19를 핑계로 취약계층 아동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경남 진주시)의원이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개년 '드림스타트 사업 가정방문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광주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17.7%만 가정방문을 받았다. 광주 취약계층 아동 1088명 중 193명만 직접 찾아가 현장점검이 이뤄진 것이다. 나머지(895명·82.3%)는 단 한 차례도 가정방문을 받지 못하고, 연기되거나 유선 상담으로 대체됐다. 이는 전국에서 방문률이 가장 낮은 수치이다.

아동복지법 37조에 따른 '드림스타트 사업'은 만 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

발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선진 아동 복지사업으로, 구별 차이는 있으나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복지·보건·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자치구 설명이다.

공통적으로는 예방접종·영양교육·기초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구별로 아동의 정서·행동을 위한 각종 교육 학습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광주지역 자치구들이 취약계층의 아동 돌봄을 코로나19위기에 속해 내뱉겨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18년과 2019년 가정방문 상담이 거의 100%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이유로 전국 취약계층 아동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라는 건강의원 측의 설명이다.

광주 자치구 담당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위험을 직접 방문을 하지 않은 이유로 내세운다. 하지만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평균 42.3% 가정방문이 이

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 자치구들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코로나19를 핑계삼아 취약계층의 아동 돌봄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만한 상황이다.

▲양육환경(돌봄) ▲아동안전확인 ▲안전교육 등을 확인하는 '드림스타트 가정방문 체크리스트'만 보더라도 취약계층 아동들을 방치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 항목인 아동의 학대 흔적, 보호자의 부적절한 태도, 양육에 부적절한 가정환경, 발육부진·영양실조 등은 가정 방문이 아닌, 유선상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항목이다.

강 의원은 "정부의 탁상행정 속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방치되었을 위험이 크다"며 "제2의 인천 라면 형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부모와 아이 옆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공공 아동보호체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어르신들 좋으시죠~" 28일 광주시 동구 자산1동 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어르신들에게 염색 등 미용 봉사를 하고 있다. (광주 동구 제공)

음주운전 사망사고 판결 2제...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6km 과속 2명 사망...대전지법 징역 7년 선고
144km 과속 3명 사망...광주지법 징역 2년6개월
유사한 사건 '관대한 처분'?

술을 마시고 과속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3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원칙에 따라 선고를 했다고 하지만, 대전지법의 유사사건과 비교해 '관대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했던 행위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음주운전, 시속 144km, 사망자 3명, 용서 못받았지만 징역 2년6개월=A씨는 지난해 8월, 동순천 IC에서 울춘 산단 쪽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내리막 구간을 2차로를 달리다 순천-목포간 고속도로 램프 구간을 통해 진입한 뒤 급하게 좌회전해 2차로로 들어오는 피해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90km)를 넘긴 144.5km로 달리다 피해 차량을 뒤늦게 발견, 사고를 냈고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3명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전 폭탄주를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사고 뒤 3시간 가까이 지나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4%로 조사됐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속도위반, 전방주시의무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측의 용서도 받지 못했고 같은 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5개월만에 사고를 낸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는 게 당시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진입램프에서 급격하게 좌회전해 3차로를 지나 2차로로 진입한 피해 차량 과실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측 과실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

인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도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음주운전, 시속 166km, 사망자 2명, 미합의, 징역 7년=B씨는 지난 7월 새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도로를 달리다 대전나들목 인근(부산방향 273.8km)에서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상태였고 제한속도(100km)보다 66.5km를 넘긴 166.55km속도로 1차로에서 3차로까지 연속해 차선을 변경하거나 차선을 이탈한 상태로 달리는 등 운행하다 차선을 변경하려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대전지법 형사 2단부 재판부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사고를 냈고 피해자측과도 합의하지 않았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선고 형량은 해당 사건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징역 3년-5년)보다도 높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을 엄중히 처벌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광주지법의 양형(量刑)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데, 법조계에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한 점과 피해자측 과실이 사고 발생의 상당한 원인이었다고 판단한 데 따라 양형 기준이 달라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행 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학의 전 차관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법정 구속됐다. 1심 성 접대를 비롯한 3억4천만 원 수수 혐의를 무죄를 판단한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10년 전의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는다"며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인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

관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점에 비춰 보면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었고, 김 전 차관이 이 같은 가능성을 알고도 금품을 받았다고 재판부는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갑질' 롯데슈퍼 과징금 철회

광주 농업법인서 과일 사들였다가 별 이유 없이 반품

기업형 슈퍼마켓(SSM) 롯데슈퍼가 광주지역 농업법인에서 2400만원 상당의 제철 과일을 사들였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반품했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롯데슈퍼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딸기, 참외, 토마토 등 과일 2400만원 어치를 운전자도 농업법인에서 '직매입' 형태로 사들였다. '직매입'은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롯데슈퍼측은 해당 업체에 반품 사유

를 제대로 알려주지도, 반품 비용도 주지 않았다. 광주 뿐 아니라 롯데슈퍼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8억 2000만원 상당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반영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류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억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롯데그룹 계열회사로서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CS유통도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3억2000만원 어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두 회사는 부당 반품 외에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주고 할인 행사비용을 떠넘기는가 하면, 업체 직원을 파견받아 싸우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달리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